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39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2. 21. 시행)됨에 따라 자동차 변경·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

제24조제3항 중 “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”을 “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”으로, “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”을 “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”을 “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”으로, “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”을 “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2호”를 “등록번호판을, 제2호”로, “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4호”를 “영치된 등록번호판을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, 제5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

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”으로 한다.

2.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4조(등록번호의 변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<u>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</u>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<u>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</u>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25조(시·도 간의 변경등록) ①</p>	<p>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<u>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</u></p> <p>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등록번호의 변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 <u>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</u> ----- ----- <u>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</u>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시·도 간의 변경등록) ①</p>

(생략)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,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,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삭제

④ (생략)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(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) 이내에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2호에 해당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-----  
-----  
-----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4호----- 등록번호판을, 제2호-----

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

3.·4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----- 영치된 등록번호판을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, 제5호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
3. -----  
--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-----

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60